

第165回國會

政治關係法審議
特別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時 1993年12月1日(水)
場所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通信秘密保護法案(代案)
2.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

審査된案件

1. 通信秘密保護法案(代案)1面
2.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1面

(11時41分 開議)

○委員長 申相式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65回國會 第3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1. 通信秘密保護法案(代案)
2.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通信秘密保護法案(代案)과 議事日程 第2項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 이상 2件을 一括해서 上程합니다.

朴相千委員 나오셔서 通信秘密保護法案(代案) 審査結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相千委員 第1審議班의 朴相千委員입니다. 通信秘密保護法案에 대한 審議結果를 報告 드리겠습니다.

當 審議班은 民主自由黨 申相式議員의 21人과 民主黨 朴相千議員의 93人이 각각 發議한 通信秘密保護法案을 심의한 결과 이 두 案을 모두 폐기하기로 하고 通信秘密保護法案에 대한 當 特別委員會의 代案을 채택하여 오늘 委員會에 報告하게 되었습니다.

當 審議班에서 채택한 代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通信制限措置 즉 郵便의 檢閱이나 電氣·通信의 盜聽 또는 공개되지 아니한 他人間의 對話의 녹음 청취는 반드시 法院이 발부한 令狀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犯罪搜查를 위한 通信制限措置는 檢事의 신청에 의한 地

方法院이나 支院의 許可를 받도록 하였으며 國家安保를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通信制限措置를 할 경우에는 通信의 쌍방 또는 일방 당사자가 內國人일 때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情報搜查機關의 長이 高等法院 首席部長判事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大韓民國에 적대하는 國家, 反國家活動의 혐의가 있는 外國의 機關 團體와 外國人, 大韓民國의 統治權이 사실상 미치지 아니하는 韓半島內의 集團이나 外國에 소재하는 그 傘下團體의 구성원의 通信에 대하여는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通信制限措置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法院 또는 大統領의 事前 許可나 承認節次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許可나 承認없이 通信制限措置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48時間 이내에 法院의 許可나 大統領의 承認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國家機關을 제외한 地方自治團體나 私인이 監聽設備를 제조하거나 輸入 또는 판매하는 등의 경우에는 遞信部長官의 認可를 받도록 하고 이 法施行 당시에 監聽設備를 소지 또는 사용하고 있는 者는 이 法施行日로부터 3個月 이내에 遞信部長官의 認可를 받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刑事處罰토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法案의 判定으로 지난 30餘年間 마구잡이로 進行되어온 國家權力에 의한

電話盜聽事態, 이로 인하여 집에 전화를 2대씩이나 두기도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종식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民間人들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盜聽機器가 소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러한 盜聽機器들을 모두 등록해서 다가오는 情報化時代가 私生活의 秘密이 지켜지는 세상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通信秘密保護法案 代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當審議班에서 報告한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報告를 마칩니다.

○委員長 申相式 다음은 朴燾太委員 나오셔서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 審査結果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朴燾太委員 第1審議班 朴燾太委員입니다.

政黨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審査結果를 報告드리겠습니다.

申相式議員外 171人和 趙世衡議員外 95人이 각각 發議한 政黨法中改正法律案은 政黨設立要件과 政黨加入資格 및 節次등을 완화 내지 간소화함으로써 國民의 政治參與機會를 확대하고자 하는 기본취지는 동일하나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當審議班에서는 이러한 차이점을 중심으로 協議를 진행한 결과, 두 案을 모두 폐기하고 代案을 채택하기로 合意하였으며, 이를 成案하여 오늘 委員會에 報告하게 되었습니다.

當審議班에서 合意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政黨의 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에 대해서 大統領令에 委任되었던 것을 직접 法律에 규정하는 한편 言論人과, 公務員중 政治에 사실상 참여하는 國務委員이나 政黨의 政策研究委員, 國會議員補佐官등에 대하여는 政黨加入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둘째, 入黨 및 脫黨節次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政黨活動을 희망하는 자는 地區黨에서 入黨이나 脫黨을 거부할 경우 中央黨에 入黨 또는 脫黨願書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自意에 의한 政黨加入이나 脫黨을 방해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셋째, 政黨設立에 필요한 法定地區黨數를

地域區選舉區總數의 5분의 1이상(48個)에서 10분의 1이상 (24個)으로 政黨設立要件을 완화해서 누구든지 政黨을 설립할 의사만 있으면 쉽게 政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政黨活動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政黨의 創黨과 活動을 방해한 者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하였으며, 黨費納付制度를 도입하여 政黨의 自立基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統·班長의 政黨加入을 허용하는 대신에 選舉運動을 할 수 없도록 選舉法에 규정하기로 하였으며, 法院簿冊과 印章등의 引繼節次를 규정하는 한편, 政黨機構의 法定化問題, 公職候補者의 추천에 黨員의 同意를 반영하는 문제 및 地區黨創黨承認 取消事由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政黨의 特殊性이 있음을 고려해서 黨憲에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외에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當審議班에서 報告한대로 議決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申相式議員外 21人이 發議한 通信秘密保護法案과 朴相千議員外 93人이 發議한 通信秘密保護法案을 폐기하고 議事日程 第1項 通信秘密保護法案代案을 審査報告한대로 國會法 第51條의 規定에 의거 當委員會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申相式議員外 171人이 發議한 政黨法中改正法律案과 趙世衡議員外 96人이 發議한 政黨法中改正法律案을 廢棄하고 議事日程 第2項 政黨法中改正法律案代案을 審査報告한 대로 國會法 第51條의 規定에 따라 當委員會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會議를 마치면서 委員 여러분 그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李永權委員 議事進行發言입니다.

오늘 두 개의 法案이 우리 特委에서 통과된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 安企部法에 대한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本委員이 제안해서 우리 特委에서 決議된 바도 있었는데 중요한 法案에 대해서는 전체 會議을 한 번 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2班에서 審議를 계속 했습니다마는 搜查權의 改廢問題와 情報委의 審査의 범위를 놓고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會議에서 이 安企部法案에 대한 토론을 한번 여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本委員의 생각으로서는 가장 참여화된 法案이고 관심이 많은 法案인 만큼 격의없는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委員長님이 그 議決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申相式 李永權委員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安企部法案은 현재 우리 第2審議班에서 그동안 심도있게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審議班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도 어려운 문제가 전체 會議에서 토론을 한다고 해결이 속히 되겠느냐... 委員長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決議할 사항이 아니고 兩黨 幹事가 의논을 하도록 委任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永權委員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해 주세요.

○委員長 申相式 兩黨 幹事와 委員長이 상의하는 방향으로 委任해 주시고 오늘 會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時54分 散會)

○出席委員

申 相 式	姜 信 玉	金 榮 駟
金 榮 珍	朴 憲 基	朴 燾 太
白 南 治	黃 潤 鎰	姜 秀 淋
朴 相 千	李 永 權	鄭 均 桓
諸 廷 坵	洪 思 德	車 秀 明

○出席專門委員및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立 法 審 議 官
立 法 審 議 官

韓 世 東
朴 奉 國
申 世 華